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R&D사업 참여실적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의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형태>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0.6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4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을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마. 업 무 중 첩 도	(1)책임기술자	[10] (6)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예시 > <table><tr><td>구분</td><td>25월미만</td><td>25월이상 30월미만</td><td>30월이상 35월미만</td><td>35월이상 40월미만</td><td>40월이상</td></tr><tr><td>점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분야별 책임기술자	(4)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예시 > <table><tr><td>구분</td><td>25월미만</td><td>25월이상 30월미만</td><td>30월이상 35월미만</td><td>35월이상 40월미만</td><td>40월이상</td></tr><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